

터키 트라브존 세종학당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

이 협약은 주터키 대한민국 대사관과 흑해공과대학교 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트라브존 세종학당을 개설하는 것을 규정한다.

제 1 조 (기본 방향)

두 기관은 대한민국과 터키의 언어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, 한국 문화 전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 협약의 목적은 협약 주체인 주터키 대한민국대사관과 흑해공과대학교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맺는 것이다.

- 한국의 언어, 문학, 예술 전파 및 한국어 교육 지원
-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현대사회에 대한 교육 실시
- 한국어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후원
- 한국의 언어, 문화, 예술, 역사와의 친밀감 촉진
- 한국과 터키 간 교육적, 문화적 교류 촉진

제 3 조 (의무)

본 협약에서 주터키 대한민국대사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트라브존 세종학당의 개설 및 운영을 담당한다.
- 세종학당 본부로부터 교부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한다.
- 트라브존 세종학당을 위한 국내외 정보 및 물품 전달 역할을 수행한다.
- 트라브존 세종학당 운영 평가 등 현지에서 필요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.

본 협약에서 흑해공과대학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트라브존 세종학당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및 한국 문화를 알리는 교육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.
- 트라브존 세종학당에서 근무할 교사 및 행정 요원에 대한 비자 취득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.

- 트라브존 세종학당 및 수업과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고한다.
- 트라브존 세종학당 사무실에 세종학당 현판을 설치한다.

제 4 조 (운영 관리)

- 트라브존 세종학당의 대표(세종학당장)는 주터키 대한민국대사관의 문화원장이 되며, 학당 운영의 제반 주요 사항을 협의, 결정하기 위하여 총 4 인의 운영 위원회를 구성한다. 2 인은 흑해공과대학교에서 지정하며, 나머지 2 인은 트라브존 세종학당의 대표를 포함하여 주터키 대한민국대사관이 지정한다. 흑해공과대학교에서 지정된 위원 중 1 인은 세종학당의 부학당장 직을 맡는다.
- 운영위원회는 세종학당장과 부학당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최한다.

제 5 조 (법적 책임)

- 이 협약에서 제시된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협약 당사자는 대한민국 및 터키공화국의 법을 준수한다.
- 협약에서 제시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협약 당사자 서로에게 주어진다.

제 6 조 (유효기간)

- 본 협약은 당사자의 서명과 동시에 유효하나, 한국과 터키내 관련 상위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정식 발효된다.
-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 년이며, 2 년동안 협약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2 년 연장된다.
- 계약 첫 해에 당사자가 아무 의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은 해제된다.

제 7 조 (분쟁해결)

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이행 과정 중 분쟁 및 논란이 발생할 경우 우호적인 태도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협약을 체결한 곳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제 8 조 (불가항력)

국가 돌발사건, 전쟁, 정부의 금지령 또는 기타 본 협약의 규제 범위를 초과하여 협약 당사자가 계속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, 협약 당사자는 반드시

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서 협약의 연장 또는 취소를 해야 하며 협약 상대방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.

제 9 조(협력 사항)

협약 당사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로 성실히 협조한다.

- 트라브존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세종학당 개설 및 운영
-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, 터키 공화국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교육자료 지원
- 터키 내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
- 협약 당사자가 보유한 지식, 경험, 문화시설 등의 적극적인 제공
- 그 밖에 협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사항

제 10 조 (업무 범위)

트라브존 세종학당은 아래 항목 또는 기타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.

-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등의 여러 방식을 통한 한국어 교육
- 한국어 교사 양성 및 재교육
- 한국어 관련 시험 실시
- 다양한 한국어 과정/교육 실시
- 학술 활동과 기타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대회 개최
- 한국 영화와 TV 교육 내용 방영
-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자문 제공
- 교육계 및 기타 직업의 인사에게 자문 제공

제 11 조(경비 부담)

- 트라브존 세종학당에서 근무하는 강사 및 운영 요원의 급여 및 전화요금은 세종학당이 부담한다.
- 흑해공과대학교는 트라브존 세종학당의 인터넷 및 전기요금, 수도요금, 난방비를 부담한다. 트라브존 세종학당과 흑해공과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운영 경비는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한다.

제 12 조 (강의 및 수업료 징수, 분배)

- 세종학당에서 개설할 강의는 세종학당 본부의 지침과 흑해공과대학교의 일반 강의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정한다.
- 수강 신청 접수는 흑해공과대학교에서 대행한다.
- 흑해공과대학교의 일반 수업 이외의 유료강좌의 개설 여부는 세종학당과 흑해공과대학교가 공동으로 결정한다. 유료강좌의 수업료 징수 및 납부방법, 징수된 수업료의 배분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서 세종학당과 흑해공과대학교가 공동으로 결정한다.

제 13 조 (지식재산권)

- 트라브존 세종학당 관련 표지 및 휘장의 지식재산권은 세종학당 본부가 단독으로 소유한다. 본 협약 종결 후 흑해공과대학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세종학당 관련 표지 및 휘장을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- 세종학당과 흑해공과대학교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쌍방 협의를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결정한다.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, 우호 협력의 기초 하에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.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국제관례에 따라서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 결정한다.

제 14 조 (협약 수정)

본 협약은 협상과 토론을 통해서 수정될 수 있다. 모든 수정된 사항은 한국어와 터키어 두 가지 언어로 서면으로 작성되며, 협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대표가 서명을 하여야 효력을 가진다.

제 15 조 (협약 종결)

아래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면 본 협약은 종결될 수 있다.

- 협약 기간이 만료되거나, 당사자가 협력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종결될 수 있다.
- 본 협약을 이행할 조건이 이미 상실되거나 협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본 협약은 종결될 수 있다
- 예기된 목적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본 협약은 종결될 수 있다.
-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본 협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본 협약은 종결될 수 있다.

제 16 조 (협약 언어)

협약서는 한국어와 터키어로 2 부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 부씩 보관하며, 두 가지 언어의 협약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.

2014 년 1 월 31 일

터키 흑해공과대학교
총장 Süleyman BAYKAL



주터키 대한민국대사관
대사 이 상 규

